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
----------	----

제출연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52호, 2006.7.1시행)」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3조중 “담당관”을 “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u>법</u> 이 라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u>영</u>”이라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이하 “<u>본청</u>”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 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 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 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u>영</u>”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            .....            .....            .....            .....            .....</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            .....<u>담당관과</u> <u>여유기구</u>, <u>한시기구</u>.....            .....            .....            .....</p>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52호)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교육청 : 2개 과·담당관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도 교육청 : 1개 과·담당관

**제7조 (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과·담당관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05.3.31, 2006.2.10>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제7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부산광역시교육청		2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경기도교육청		5실·국이내	24과·담당관이내
광역시	인구 : 800만이상 학생 : 16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400만이상 학생 : 8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200만이상 학생 : 4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도	인구 : 600만이상 학생 : 12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300만이상 학생 : 6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150만이상 학생 : 3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비 고

1. 실·국 및 과·담당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4.1.29>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구 분	국	과·담 당 관
인구 50만 이상, 학생 7만 이상	2국 이내	6과·담당관 이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경상남도마산교육청		4과·담당관 이내
기 타		2과·담당관 이내

비 고 :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